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34호 2009. 12. 2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37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 36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75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76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4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77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7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4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389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5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402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403호 공고 ----- 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4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
신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입법예고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410호 2010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 55

기 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사업시행자
지정 ----- 6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 6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

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별표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2)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에 의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쉼매장 관리운영
2.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
3.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4.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
6. 도서관 관리 운영
7. 기타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하고,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용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중 "5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를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1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서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 수립 및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용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3(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외 부분 중 “공장등록 또는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를 “중소기업으로 하며”로 하고, “업체로 한다.”를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용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전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와 협의하여”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금고는”를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구청장과 금융기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를 “용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용자금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

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센터 장 선임시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및 단체에 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을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센터 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도·감독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6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력인정)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 단체는 등록·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이하 “치매센터” 라 한다) 로 한다.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 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치매예방에 관한 업무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관리체계 및 유관 관계자와의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치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2회에 한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치매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

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 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5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이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7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의 범위) ① 업체별 용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
 한다.

② 용자수혜업체는 용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채용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실적서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
 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구

제3조(센터의 기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소장, 운영위원회, 운영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소 장 : 1명
2. 운영위원회 : 20명 이하(당연직 운영위원 포함)
3. 운 영 팀 : 팀장 1명, 운영요원 2명

제3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장, 서기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된다.

제4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제13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산) ① 소장은 다음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 보고서 1부.

제17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정원·인사·보수·복무관리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소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채용은 모집공고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④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소장의 임기는 근무상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다.

⑤ 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보수지급)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소장은 별정직 5급 상당, 팀장은 별정직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직원의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2와 같다.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직원의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공인관리 및 기타

제21조(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 장이하이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보험가입)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원 임용 선발 자격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소 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 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팀 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운 영 요 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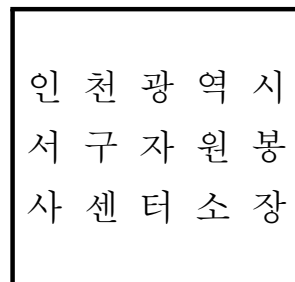
[별표2]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을 경력(8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근무 경력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병 경력(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별표3]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규격 : 가로 2.1cm × 세로 2.1cm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5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검단자이 1단지 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엔티씨건설 대표 하원철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9블록 1~8로트
 - 나. 대지면적 : 26,998.500m²
 - 다. 연 면 적 : 77,430.443m²
 - 라. 사 업 비 : 216,500,000,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6개동 418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10.12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내용
 - 가. 건축면적 : 6,364.084m² ⇒ 6,379.342m² (동주출입구, 경비실 캐노피 증가)
 - 나. 연 면 적 : 77,427.971m² ⇒ 77,430,443m²
 - 다. 건 폐 율 : 23.57% ⇒ 23.63%
 - 라. 기타내용
 - 파일수량 변경, 문주 및 주차장 램프 설치, 다락방 마감개선,
 - 아파트 외벽마감 향상, 지하주차장 구조 및 마감 향상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6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점단자이 2단지 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이우정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1블록 1,3로트
 - 나. 대지면적 : 26,336.100m²
 - 다. 연 면 적 : 73,254.502m²
 - 라. 사 업 비 : 212,200,000,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7개동 413세대
4. 사업기간 : 2007.10 ~ 2010.12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변경사항 없음”
6. 변경내용
 - 가. 건축면적 : 6,481.206m² ⇒ 6,496.129m²
(동주출입구, 경비실 캐노피 증가)
 - 나. 연 면 적 : 73,245.356m² ⇒ 73,254,502m²
 - 다. 건 폐 율 : 24.61% ⇒ 24.67%
 - 라. 기타내용
 - 파일수량 변경, 문주 및 주차장 램프 설치, 다락방 마감개선,
 - 아파트 외벽마감 향상, 지하주차장 구조 및 마감 향상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7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검단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주기용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3블록 1~5롯트
 - 나. 대지면적 : 21,693.20m²
 - 다. 연 면 적 : 65,514.4840m²
 - 라. 사 업 비 : 176,580,496,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3~ 15층 9개동 309세대
4. 사업기간 : 2007.11.19 ~ 2010.03.18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6. 변경내용
 - 가. 사업기간 : 2007.11.19 ~ 2010.01.18 ⇒ 2007.11.19 ~ 2010.03.18
 - 나. 건축면적 : 4,057.939m² ⇒ 4,729.236m² (동주출입구, 관리동 캐노피 증가)
 - 다. 연 면 적 : 65,488.146m² ⇒ 65,514,484m²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라. 건 폐 율 : 18.71% ⇒ 21.80%
 - 마. 주차대수 : 589대 ⇒ 587대
 - 바. 조경면적 : 16,069.99m² ⇒ 16,456.33m²
 - 사. 동출입구 입면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재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제8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을 고시합니다.

200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칭	중부좌표	
		X	Y
334	지적도근점	446758.89	170678.12
5506	지적도근점	446745.88	170750.55
5507	지적도근점	446739.47	170874.44
17	지적도근점	446732.81	171004.01
5508	지적도근점	446659.87	170995.22
5509	지적도근점	446633.56	171029.34
32	지적도근점	446466.55	171027.82
33	지적도근점	446338.88	171017.10
40	지적도근점	446335.58	170958.17
41	지적도근점	446200.60	170951.38
42	지적도근점	446202.07	170845.90
43	지적도근점	446212.25	170720.34
337	지적도근점	446230.87	170667.92
335	지적도근점	446591.81	170686.52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신현동 일원
- 측량연월일 : 2009년 12월 4일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글로벌지적측량센터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9-1389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

1. 성 명 : 홍 명 희(700118-2*****)
2. 주 소 : 인천 서구 공촌동
3. 내 용

공시송달명	무단점유현황	부과기간	부과예정금액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송달	인천 서구 심곡동 257-12	2008.01.01~ 2009.06.28	12,245,040원

4. 공고기간 : 2009.12.21 ~ 2010.01.04(15일간)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560-4163】

2009.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2호 부 양 의 무 자 확 인 공 고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 명	박건우	성별	남	연령	4세	당세		
	주 소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동 901호							
	특 징								
부양의무자, 기타보호자	성 명	최영란		미성년자 와의관계	위탁모				
보호시설	시설명	일반가정위탁보호		대표자					
	보호개시일	2007년	11월	1일	소재지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901			
후견인	성 명	최영란		주 소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901				
참고사항									
<p>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12월 23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3호

공 고 문

검단1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9.12.21자로 환지처분 공고되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완료 신고가 접수되어,

지적사무처리규정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환지확정에 의한 신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열람대상
 - 구 지적공부 : 855필지(404,602m²)
 - 신 지적공부 : 466필지(406,697.0m²)
- 열람기간 : 2009.12.23 - 12.30 (7일간)
-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민원실)
- 시행일자 : 2009.12. 23.

200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 신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 신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예규로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28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 신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2. 입법취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승인·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예규로 정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의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민생활의 편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용대상(안 제2조)
-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기준(안 제3조)
- 다른 법령의 검토(안 제4조)
-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조건(안 제5조)
-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예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01월 18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환경보전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심곡동244번지), FAX: 560-48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지침(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폐기물관리팀 【☎ 032) 560-4891】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 신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10호

2010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수시신청은 퇴직예정일 20일전)

- 명예퇴직 예정일 : 매월 말 (※ 수시신청은 퇴직 희망일)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⑥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⑦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⑧ 그 외 ①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함.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 명예퇴직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 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 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을 초과하는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월 봉급액 산출방식 >

☞ **호봉제 공무원 : 봉급표상 봉급액의 81%**

예시) 봉급표상 봉급액 × 0.81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81%×66% ×1/2 = [(연봉액-성과연봉) / 12] ×81%×66% ×1/2**

예시) 연봉월액 × 0.81 × 0.66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지급**

※ 단, 월 봉급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 함.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 ① 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자필 사직원 1부
-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또는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						
⑦전화번호 (자택)	⑧ 근속년수	년 월 일	⑨ 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p>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1. 명예퇴직원 및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r> <td style="width: 15%;">※ ⑭ 확인</td> <td style="width: 15%;">인사 담당</td> <td style="width: 30%;">(인)</td> <td style="width: 15%;">연금 담당</td> <td style="width: 25%;">(인)</td> </tr> </table>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⑭ 확인	인사 담당	(인)	연금 담당	(인)
※ ⑭ 확인	인사 담당	(인)	연금 담당	(인)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또는 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⑦전화번호 (자 택)		⑧ 근속년수	년 월 일	⑨ 정년 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 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p>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1. 조기퇴직원 1부. 2. 조기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⑭ 확인</td> <td style="padding: 2px;">인 사 담 당</td> <td style="padding: 2px;">(인)</td> <td style="padding: 2px;">연 금 담 당</td> <td style="padding: 2px;">(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 .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⑭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⑭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p>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10.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0.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0.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 - 398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대로3류58호선, 사업명: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440-3793), 서구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58호선)
 【명칭】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연장 445.7m, 폭 25~31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5.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 사업시행자와 병행(동시) 신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 - 399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58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대로3류58호선, 사업명: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440-3793), 서구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 28 .

인 천 광 역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58호선)
 【명칭】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연장 445.7m, 폭 25~31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12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제6항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용 지 조 서

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순번	지 목				단위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편입	공부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용	
1	산145-5		임			54	4	인천시	공				
2	산214-5		도			48	16	건설부	국				
3	산147-3		임			186	122	인천시	공				
4	383-12		대			1,521	758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우리은행	근저당권설정	
5	산149		임			6,545	1,857	인천 서구 오류동 542	이상원				
6	산150		임			1,488	1	인천 서구 오류동 395-56	김병문				
7	379		답			1,131	139	인천 서구 오류도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8	378		답			1,415	358	인천 서구 검암동 595-3 서해그랑블 111-1102	김홍현	인천 서구 신흥동 283-3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9	376		답			1,336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40-7	김혜란				
10	357-5		답			1,438	248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항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1	357-4		답			1,025	946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항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2	373		답			2,162	2,036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1 신도브래뉴a 101-1201	강천구				
13	374		답			1,785	92	인천 계양구 작전동 72-2 한아름a 916호	김현길	인천 계양구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4-8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7-26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김영록 우종관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4	372		답			1,283	405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a 303-1802	이용필				
15	371-2		답			2,400	431	인천 서구 가좌동 119-29	권오연				
16	371-1		답			268	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9-3 상가주택 201호	이동승				
17	358-2		답			3,660	2,488	인천 서구 가좌동 207-1 영남a 마동 301호	장동복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93	(주)삼중엔비스	근저당권설정	
18	361-1		답			2,768	1,619	인천 서구 오류동 253	이대우				
19	산147-2		임			262	37	인천시	공				
20	383-16		대			178	153	인천시	공				
21	383-17		대			3	3	인천시	공				
22	383-11		대			620	620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358 7L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용 지 조 서

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순번	지 목				단위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편입	공부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용	
23	383-15		대			1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주) 한국토지신탁				
24	383-4		대			108	108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25	산148-6		임			137	61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26	383-10		임			384	384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27	산148-12		임			463	463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28	산148-3		임			911	764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35B 7L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29	383-3		대			4,148	432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	
30	380		답			1,322	500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1	354-1		답			345	345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32	354		대			2,624	181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설정	
33	355		답			3,302	1,786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7-6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 309동 1401호	유환규 유신규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34	357-3		답			883	883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항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5	356-2		답			2,717	717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9-11	문순란				
36	357-1		답			2,354	108	인천 중구 운남동 33-1	김화경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7	357-6		답			4,136	2,391	인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 101-15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7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501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신도림대림a 405-1202 인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 101-801	이영복 이명희 이명희 이명식 이윤복				지분95분의36 지분95분의11 지분95분의11 지분95분의11 지분95분의26
38	358-3		답			2,291	105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대우2차a 109-601	김장환				
39	358-1		답			2,003	1	인천 서구 오류동 257	오세근				
합 계						59,705	21,625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 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m2)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인천 서구 오류동	383-10	임	가옥부속물	목조, 천막	49	양완식		
2	"	383-12	대	사무실	벽돌조, 슬래브지붕	362	김선권		
3	"	148-12	임	가옥부속물	목조, 천막	29	양완식		
4	"	148-3	임	공장	경량철골조, 함석	1,299	대성산기		
				창고		43			
5	"	149	임	창고	컨테이너	26	대성산기		
				창고		7			
				창고		14			
6	"	380	답	창고	컨테이너	18	대성산기		
				창고		18			
				창고		27			
7	"	383-11	대	작업장	철골조, 판넬지붕	346	프로미월드		
				창고	벽돌조	17			
				창고	골함석	70			
8	"	383-3	대	공장	샌드위치 판넬	227	대성산기		
				공장	샌드위치 판넬	333			
				창고	컨테이너	30			
9	"	383-3	대	창고	블럭조, 함석	35			
10	"	354	대	창고	골함석	4			